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7,536,883	20,326,106
일반회계	643,793,093	19,313,793
특별회계	33,743,790	1,012,314
공기업특별회계	10,960,243	328,807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960,243	328,807
기타특별회계	22,783,547	683,50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512,120	45,364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80,941	44,42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6,913	25,707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33,414	25,002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2,890,232	86,707
수질개선 특별회계	8,609,306	258,279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728,06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